



2005년 달라지는 주요 축산정책

●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 시범사업 본격 시행

2005년 2월부터 정부에서는 쇠고기 이력 추적시스템 사업이 시범 실시된다. 농·축제는 생산에서 소비까지 유통경로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소비자의 쇠고기 구매에 대한 불신감 해소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 품질고급화장려금 지급 시행

생산자단체에서 생산자확인증명서를 발급받은 한·육우 거세우를 출하한 생산자가 1**A, 1**B, 1*A, 1*B, 1A, 1B등급을 받으면 품질고급화장려금이 지급된다. 지급금액은 한우는 1**A, 1**B, 1*A, 1*B등급 200천원과 1A, 1B등급 100천원, 육우는 1**A, 1**B, 1*A, 1*B, 1A, 1B등급을 받은 경우 100천원이 지급된다.

● 학교우유급식 지원 대상자 확대

종전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초등학교생 210천명에게 연간 3백일 기준으로 200ml 맥색우유를 공급하던 것에서 우유소비확대 및 학교급식 개선을 위해 초등학교생은 현재대로 유지하고, 중학생 6만9천명까지 확대해 지원하면서 지원대상자도 고등학교생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 자체위생관리기준(SSOP) 작성·운용 대상 업종 확대

현행 도축업, 축산물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 및 종업원은 당해 작업장 또는 업소에서 자체위생관리기준(SSOP)을 작성·운용하고 있으며, 집유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축산물판매업으로 확대 실시된다.

● 식육판매업소에서의 표시사항 신설 및 원산지 영수증 발급

식육판매업소에서 식육을 용기에 담아 미닐 등으로 포장해 진열·판매하는 경우에는 식육의 부위명·원산지·제조일자·유통기한·보관방법 및 조리방법이 표시된 스티커를 붙이거나 미닐 등에 표시하여야 하며, 음식점의 영업자 등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기재한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서 등을 발급해야 한다.

● 식육판매업소 등의 HACCP 시행

HACCP 시행을 도축장, 축산물가공장에서뿐만 아니라 식육판매업소,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등에서도 HACCP를 시행한다.

● 검사관의 기준업무량 제정

도축위생검사관의 기준업무량을 통한 자체검사원 및 검사보조원 배치 인원을 확대한다. 검사관의 근무인원에 따라 기준업무량을 정하였는데 예를 들어 검사관 1인이 하루에 소 30두, 돼지 3백두, 닭 2만수 이하로 검사를 하도록 하였다.

● 사료공장 HACCP 제도 도입 시행

축산물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사료의 제조·유통과정에서 위해요소를 중점 관리할 수 있는 기준을 정함으로써 안전을 확보하도록 한다.

● 소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 휴대제도 확대 등 방역대책 추진 강화

가축시장에 출하하는 1세 이상의 모든 한육우 암소(도축용 포함)가 검진증명서를 휴대하지 않은 경우 가축시장 거래와 도축이 제한되고, 소유자(농·과태료 5백만원 이하 처분받게 된다. 부루세라병 검사증명서가 없는 소를 구입하여 부루세라병이 발생한 경우 살처분 보상금을 평가액의 60%만 지급받게 된다.

● 가축사육환경개선시범사업

가축밀집사육지역의 축산농가가 타 지역으로 축사를 이전하면 친환경축사 시설비, 기반조성비, 기존축사철거비 등을 지원한다. 지원조건은 축사신비(음자), 기반정비 및 철거비(기금보조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등이다.

● 악취방지법 시행

대기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악취를 그 특성에 맞추어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악취방지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시행된다. 악취방지계획에 따라 악취관리지역 내에서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가 의무화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1차 개선명령, 2차 사용중지명령 또는 50백만원 이하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악취관리지역 밖의 배출허용기준 초과사업장은 규제를 완화하여 1차 개선권고, 2차조치명령이다.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못할 경우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